

비과세종합저축 특약

제 1 조 약관의 적용

비과세종합저축(이하 "저축"이라 합니다)의 거래 시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, 주식회사 카카오뱅크(이하 "카카오뱅크"라 합니다)가 취급하는 각종 예금·신탁·채권 등(이하 '예금 등'이라 합니다)의 약관(특약 포함)과 「조세특례제한법」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 2 조 가입대상자

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「소득세법」 제 1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1. 만 65 세 이상인 거주자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 32 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2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-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 4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5.18 민주화운동부상자

제 3 조 저축의 가입

이 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 전 카카오뱅크에 가입자 등록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제 4 조 대상 예금

카카오뱅크가 취급하는 모든 예금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예금 등과 각 취급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예금 등은 제외합니다.

-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이 가능한 예금: CD 등
-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기 취급증인 비과세 예금 등

제 5 조 예치한도

- 이 저축으로 거래하는 모든 예금 등 계좌의 예치한도는 원금을 합하여 5 천만원(다만,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5 천만원에서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차감한 금액)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이 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등은 1 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최종 이자원가로 인하여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한도에 포함합니다.
-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이 저축의 한도로 정할 수 없습니다.

제 6 조 예치한도 산정

- 거치식 예금 등은 가입자가 가입한 저축원금으로 합니다.
- 정액(정기)적립식예금 등은 월저축금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.
-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, 자유적립식 및 추가불입이 가능한 거치식 예금 등은 저축가입자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합니다.

제 7 조 예치한도 변경

이 저축의 예치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
B

제 8 조 과세 처리

- ① 이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까지의 이자소득 등은 비과세 처리하고 **만료일 이후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.**
-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제 2 조의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, 제 15 조 과세특례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.
- ③ 제 2 항에 해당되며 비과세 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카카오뱅크는 해당 금액을 추징하고, 추징한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저축가입자에게 통보합니다.

제 9 조 표시 방법

이 저축가입자는 신규 가입 시 '비과세종합저축'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카카오뱅크는 거래내역 등에 '비과세종합저축'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
제 10 조 적용 이율

이 저축으로 가입한 각 예금 등의 적용이율은 개별 약관(특약 포함)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제 11 조 상속에 의한 특별증도해지

저축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, 상속인은 카카오뱅크에 이 저축의 해지를 신청해야 하며, 이때 카카오뱅크는 당초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. 다만 신탁·채권 등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 12 조 저축의 전환여부

이 저축과 이 저축이 아닌 예금 등은 **상호 전환할 수 없습니다.**

제 13 조 중복가입자에 대한 처리

제 12 조에 불구하고 가입자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중복하여 가입한 때에는 가입자가 이 저축으로 선택한 계좌 이외의 계좌에 대해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일반과세계좌로 전환하여야 합니다.

제 14 조 명의변경 등

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.

제 15 조 과세특례의 제한

이 저축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 제 3 항 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 16 조 과세특례 부적격 판정 통보 및 의견제시

- ① 카카오뱅크는 가입 시점에 가입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한 경우 가입을 제한합니다.
-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가입 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국세청의 최초 통지 시점에 확인하며, 이 내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립니다.
- ③ 이 저축가입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저축가입자의 사망, 해외장기출장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⑤ 제 3 항과 제 4 항에 따른 가입자의 이의가 수용되어 과세특례 자격이 적격으로 다시 판정되고 국세청이 이를 카카오뱅크에 통보한 경우 통보 내용에 따라 조치합니다.

B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특약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제 2 조(적용대상) 제 2 조의 개정규정은 이 특약 시행 후 최초로 이 저축에 가입하는 자부터 적용합니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특약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특약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제 2 조(적용대상) ① 제 15 조는 이 특약 시행 후 이 저축에 가입하는 자부터 적용합니다.

② 제 16 조는 2020년 2월 11일 이후 국세청이 과세특례 자격을 검증하는 기준 가입자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합니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특약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.

제 2 조(적용대상) 제 16 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기준 가입자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.